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3. 23.(수)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 3. 23.(수)		
담당 부서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책임자	방송기반 총괄과장 배춘환(02-2110-1260)		
		담당자	사무관 이상목 (02-2110-1275)		

방통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개사 재허가 의결

- 중소기업 광고주 지원 방안 마련 및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 방지 대책 수립 등 조건 부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3월 23일(수) 제13차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합편성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렙㈜, ㈜티브이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이번 재허가는 '21년 10월 27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광고, 법률, 경제·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심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심사결과, 재허가 대상 3개사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없이 재허가 기준 점수(총 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부터 각 5년으로 의결하였다.

- ※ (평가점수) 제이티비씨미디어컴 82.546점, 티브이조선미디어렙 81.187점, 미디어렙에이 81.277점
- ※ (재허기기간) 제이티비씨미디어컴 · 티브이조선미디어렙 : '22.4.1~'27.3.31, 미디어렙에이 : '22.4.22. ~ '27.4.21.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 광고주에 대한 광고비 할인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였다.

또한,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모니터링과 주주에 대한 교육 등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토록 하였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내용을 윤리강령 및 임직원 행동지침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추게 하고, 전문인력 채용 시 경력직 외에도 신규채용과 인턴 등을 통해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각 사별로 중점 심사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개별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였다.

향후 방통위는 매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와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붙임 1.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 2.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끝.



(붙임1)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평가점수(과락기준)		
심사사항	배점	JTBC 미디어컴	TV조선 미디어렙	미디어렙A
1. 판매계획의 공익성 · 공정성	40	33.125(24)	32.250(24)	32.500(24)
2. 경영 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 건전성	30	24.421(18)	24.187(18)	23.777(18)
3.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	10	7.875(6)	8.000(6)	8.250(6)
4. 조건 이행여부 및 그 밖에 사업수행	20	17.125(12)	16.750(12)	16.750(12)
5. 관계법령 위반 정도	감점	-	-	-
총점	100점	82.546점	81.187점	81.277점

(붙임2)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공통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구 분	내 용	비고
재허가 조건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및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이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를 재허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각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17년 재허가 조건과 동일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당한 경영 간섭 방지와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반기별 이행 실적을 반기 종료일 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17년 재허가 조건과 동일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구성 주주가 소유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재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3월말까지 점검결과 등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22년 재허가 신규 추가

	o 중소기업 광고주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3월말까지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22년 재허가 신규추가
	o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및 재허가 심사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중요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17년 재허가 조건과 동일
권고 사항	o 공익광고 제작, 광고 관련 조사·연구 등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간 공동 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	※ '17년 재허가 권고사항과 동일
	o 전문인력 확보 시 경력직 채용뿐만 아니라, 신규채용과 인턴 등을 통해 서도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22년 재허가 신규추가

【사업자별 재허가 조건】

구분		내용	비고
㈜ 티브이조 선 미디어렙, ㈜ 미디어렙 에이	재 허 가 조건	o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인 임명 등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3월말까지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17년 재허가 조건과 동일
		o 직장내 성폭력 ·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내용을 윤리강령 및 임직원 행동수칙 등에 반영하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재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22년 재하가 신규추가